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 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 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 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문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문에 따라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하거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7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전문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9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⑥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5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 관 명)

진행번호 : 202XX보전XX호

0000. 00. 00.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기관명)

제 목 :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전 요청을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요 청 사 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 / 외국의 보전요청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공조 이행을 위해 필요
대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
필 요 한 정 보 의 범 위	별지1 기재와 같음
보 전 대 상 전 자 정 보 와 의 관 련 성	별지2 기재와 같음
보 전 요 청 기 간	조치일로부터 XX일(60일 이내)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기 관 명)

진행번호: 202X보전XX호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기관명)

제 목 :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보 전 된 전 자 정 보		별지1 기재와 같음
보 전 연 장 요 청 기 간		집행일로부터 xx일
보 전 기 간 연 장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2 기재와 같음

【별지 1】

보전된 전자정보

1. 000(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별지 2】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 기간 연장 필요 사유

(기 관 명)

진행번호 : 202XX보전XX호

0000. 00. 00.

수 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발 신 : (기관명)

제 목 :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긴급 보전을 요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요 청 사 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하나 미리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대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필 요 한 정 보 의 범 위	별지1 기재와 같음
보 전 대 상 전 자 정 보 와 의 관 련 성	별지2 기재와 같음
보 전 요 청 기 간	조치일로부터 XX일(60일 이내)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기관명)		검사지휘		
		가	부	비고
제 호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긴급 보전요청 일 시				
긴급 보전요청한 전자정보				
범죄사실 및 긴급 보전요청 사유				
긴급 보전요청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연월일			
신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	. . .
대상 전자정보		. . .	. . .
보전요청기간		. . .	. . .
검사기간		. . .	. . .
처리결과통보		. . .	. . .
보전요청	일시		
취소	사유		
보전기간	일시		
연장	연장기간		
비고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요청연월일			
요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	. . .
대상 전자정보		. . .	. . .
보전요청기간		. . .	. . .
처리결과통보		. . .	. . .
검사지휘	승인	. . . 시 분	. . . 시 분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보전요청취소	일시		
	사유		
보전기간연장	일시		
	연장기간		
비고			

(기 관 명)

진행번호 : 20XX보전취소XX호 0000. 00. 00.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기관명)

제 목 :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취소를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범 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 관 명)

진행번호 : 20XX보전취소XX호

0000. 00. 00.

수 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발 신 : (기관명)

제 목 :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통지 특별사법경찰관

①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래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취소를 통지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범 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 관 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기관명)

제 목 :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보 전 요 청 신 청 사 건 번 호

제0000-000호

보 전 조 치 결 과

첨부 전자정보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기재내용과 같음

보전조치 미이행 전자정보
및 미 조치 사유

첨부 전자정보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관 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기관명)

제 목 :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보 전 기 간 연 장 허 가
신 청 사 건 번 호

제0000-000호

보 전 기 간 연 장 조 치 결 과

첨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기재내용과
같음

보 전 기 간 연 장 조 치
미 이 행 전 자 정 보
및 미 조 치 사 유

첨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3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문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에 따른다.</u> <u>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문에 따라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서에 따른다.</u> <u>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u>		

청하거나 전자정보 보존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보존
요청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
의2제2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7서
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존요청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
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
의2제6항 전문에 따라 전자정보
보존요청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58호의8서식의 전자
정보 보존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
르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직권으
로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
9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존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⑥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
라 보존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
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존요
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보존요청을 한 검

	<u>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u> <u>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u> <u>구분에 따른다.</u> <u>1.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u> <u>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58</u> <u>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u> <u>요청 조치결과 통보서</u> <u>2.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u> <u>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u> <u>별지 제58호의11서식의 전자</u> <u>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u> <u>결과 통보서</u>
--	---